

전파사용료 산정기준 (제90조제2항제2호 관련)

1. 무선국의 송신설비별로 지정된 주파수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지정된 주파수별 전파사용료} = \text{기초가액} \times (\sqrt{\text{안테나공급전력} + \text{전파의 폭}}) \times \text{선호계수} \times \text{이용형태계수} \times \text{목적계수} \times (1 - \text{공용화 감면계수} - \text{환경친화 감면계수})$$

2. 기초가액: 2천원

3. 안테나공급전력: 와트를 단위로 산정한다.

4. 전파의 폭: kHz 단위로 산정하되, 1kHz 미만인 경우에는 1kHz로 하고 960MHz 이상의 주파수대에서는 전파의 폭이 1MHz 미만인 경우 1MHz로 한다.

5. 선호계수

주 파 수 대		계 수
U H F	300MHz 이상 960MHz 미만	1.5
V H F	28MHz 이상 300MHz 미만	1.3
중단파 이하	28MHz 미만	1
준마이크로파	960MHz 이상 3GHz 미만	0.1
마이크로파	3GHz 이상 10GHz 미만	0.0234
	10GHz 이상 30GHz 미만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8.9GHz 이상 29.5G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경우	0.0017
	그 밖의 경우	0.0034
밀리미터파	30GHz 이상	0.0004

6. 이용형태계수

이 용 형 태	계 수
단 독 이 용	1
공 동 이 용	0.1

비고: "단독이용"이란 전국적으로 시설자가 특정한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, "공동이용"이란 그 외의 경우를 말한다.

7. 목적계수

운 용 목 적	계 수
가. 무선향행업무[레이다·트랜스폰더(질의응답장치)·거리측정기·전파고도계]	0.5
나. 무선측위(탐지 및 표지를 포함한다)업무	0.1
다.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업무	1

8. 공용화 및 환경친화 감면계수 산정기준

공용화율, 환경친화율 (%)	10 미만	10 이상	20 이상	30 이상	40 이상	45 이상	50 이상	55 이상	60 이상	70 이상
		20 미만	30 미만	40 미만	45 미만	50 미만	55 미만	60 미만	70 미만	100
공용화 감 면계수	0.01	0.02	0.03	0.04	0.05	0.06	0.07	0.08	0.09	0.10
환경친화 감면계수	0.01	0.02	0.03	0.04	0.05	0.06	0.07	0.08	0.09	0.10

비고

1. 공용화율: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시설자와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신·수신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.
2. 환경친화율: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.